

에 의하여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전축·전기·가스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0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통지서는 정부공문서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보서의 처리) ① 소방관서의 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결과의 세밀한 검토

2. 동일점검대상물에 대한(소방검사 결과)의 기 조치 여부 및 사실 확인

3. 시정명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동일점검대상물의 동일전의사항에 대하여 중복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점검의 제한) ① 소방검사로 갈음되어 행정명령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화보의 장은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없이 확인점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화보의 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전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요원의 교육) 화보의 장은 점검요원의 점검능력 및 자질향상과 봉사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체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보고) ① 화보의 장은 매분기별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화보의 장은 연간 실시한 점검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익년 3월 31일까지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치) 화재예방안전점검결과 시정조치에 관한 세부지침(소방 2052-13944, 1974. 12. 8)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결과조치) 화보의 현행점검기준은 1980. 6. 30일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 消火設備割引規程의 改正

屋内消火栓과 自動火災警報機의 消火設備規程이 韓國保檢公社의 認可를 받아 改正되었다.

이에 앞서 當 協會에서는 80. 12. 23 全面적으로 改正된 消火設備割引規程에 의하여 割引検査를 實施하여 오던 중, 割引혜택의 受惠者의 범위를 더욱 擴大하여 火災保險에 대한 認識을 改善시키는 동시에 消火施設을 良好하게 設置, 維持 管理하도록 誘導하기 위해 消火施設의 能力を 低下시킬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同 規程을 다소 완화시켜 주도록, 屋内外消火栓, 自動火災警報機設備의 割引規程改正案을 마련 82. 1. 25 대한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였으며 손보협회에서는 이를 韓國保險公社에 提出, 認可를 받아 81. 5. 7 改正案이 確定된 것이다.

防災研究部에서는 同 改正內容을 본지부에 通報한 바 있다. 한편 81. 12. 29 實務作業을 完了하여

손보협회에 제출한 스프링클러설비規程 改正案은 현재 認可申請을 위해 準備中이라고 하는바 今年 후반기 중에 同 改正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 技術資格 所持者 義務履備 緩和豫定

정부는 法的義務雇傭者の 파다로 인한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방화관리자등 10個職種을 고용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등 법적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7일 상공부가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법적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각 기업은 근로기준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13개 법률에 의하여 19개 직종의 기술자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폭줄여 우선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인 방화관리자, 위험물시설안전원, 열관리사, 전기관리사, 가스안전관리자, 전기보안담당자, 조리사, 위생사, 품질관리사 및 독극물관리자등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를 면제하고, 전기, 가스, 방화등의 안전관리기능은 근로기준법상의 안전관리자의 기능에 흡수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근로조전이나 산업재해, 공해등 특히 근로자들의 복지와 안전에 관계되는 분야인 위험물취급주임, 고압가스안전관리자, 광산보안관리직원, 식품위생관리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직업훈련교사등 7개직종은 현재대로 고용의무를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방화 관리자의 3개직종은 6월중에 제도개선을 끝내고 나머지 직종은 올해중에 관계법을 개정, 실시한다고 한다. 다음표는 당 협회의 업무와 관련있는 직종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법적 고용직종 개선내용

법적의무고용직종	개선내용	관계법	비고
방화관리자	고용의무면제	소방법	
위험물시설안전원	"	"	
열관리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관리사	"	"	
가스안전관리자	"	가스사업법	
전기보안담당자	"	전기사업법	
위험물취급주임	존속	소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안전관리자	"	근로기준법	

2. 火災現場調査出張制度

본지부 점검부서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火災現場調査는 점검직원이 손해사정 담당직원과 함께 災害現場에 공동으로 出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는 損害査定規則(79.5.15 制定)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82.4.17 同規則이 「保險金支給業務處理規程」(기획조사부로부터 본지부에 통보되었